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19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김재원 · 황운하 · 조계원
김한규 · 차규근 · 서왕진
백선희 · 박정현 · 임오경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모펀드-자펀드 구조의 정책펀드의 경우 자펀드가 청산될 경우 국고에 회수되지 않고 다시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국회의 심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책펀드 전반에 관한 국회 보고 사항을 확대 및 구체화함으로써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53조의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책펀드의 자산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정책펀드 운용사업자의 선정 및 평가 기준
2. 투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심사 절차
3. 투자금 회수 시기 및 방법
4. 회수재원의 국고 귀속 또는 재투자 기준
5.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 및 방안
6. 정책 목표 달성도 평가 기준 및 방법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책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펀드의 출자 및 투자 현황

2. 정책펀드 운용에 따른 정책 목표 달성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및 투자·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수재원의 규모 및 내역

2. 재투자 대상 및 규모

3. 재투자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재투자 시기 및 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정책펀드에 관한 국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p> <p>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 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5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및 투자·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p> <p>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 보고) 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책펀드의 자산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펀드 운용사업자의 선정 및 평가 기준 2. 투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심사 절차 3. 투자금 회수 시기 및 방법 4. 회수재원의 국고 귀속 또는 재투자 기준 5.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 및 방안 6. 정책 목표 달성도 평가 기준 및 방법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책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펀드의 출자 및 투자 현황

2. 정책펀드 운용에 따른 정책 목표 달성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및 투자·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수재원의 규모 및 내역
 2. 재투자 대상 및 규모
 3. 재투자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재투자 시기 및 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그 밖에 정책펀드에 관한 국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